

KISO

JOURNAL

VOL.39

01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황용석
-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 김학웅

02 기획동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 박원재
-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 김유향

03 법제동향

- '넷플릭스법' 합의와 과제 | 김현경

04 이용자섹션

-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 구본권

05 문화시평

-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 김병일
- 제이슨 쉐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 김국현

06 KISO 뉴스



언론기관 대표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황용석 /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prohys@gmail.com)



1. 심의결정의 개요

신청인은 방송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게시물이 신청인에 관한 단순 루머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3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특정 정치 사건과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사실적시,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과 행태 등에 대한 평가와 소문 등이 적시돼 있다. KISO는 해당 3건의 게시물 모두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들 게시물들은 딥링크의 형태로 신청인과 관련된 특정 언론매체의 기사나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KISO 정책 규정 3조 3항 3호는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을 임시조치 요청 대상 게시물로 명시하고 있다. 딥링크 게시물을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의 전파적 속성과 웹 페이지의 특성상 내용의 직접 전달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한 대법

원(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판단을 딥링크 게시물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며, 이는 KISO의 심의결정에도 반영돼 있다. 한편, 이번 심의결정과 관련된 KISO의 정책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KISO는 이 조항을 근거로 3건의 게시물 모두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즉,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의 지위와 공적 관심사의 해당 여부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신청인의 공인성 검토와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은 사전적으로 ‘공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라는 판결한 것처럼, 공인을 사인 또는 사적 인물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공인의 범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무원, 정부기관의 장, 정치인, 대학 총장, 전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인, 재벌그룹 부회장, 방송사 국장, 언론사 대표, 연예인, 대통령 친인척 등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적용한 공인이었다. 법원은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직위와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확인되는 공직자와 함께 사회적으로 타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공적 관심

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인 개념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청인의 지위는 보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송국의 대표로서 공인성을 갖고 있다. 특히, 신청인은 다수 공중에게 의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게시된 내용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봐야 한다. 게시물(1)의 딥링크 내용은 신청인의 정치적 성향을 부모가 신청인을 ‘좌파’ 등으로 표현했다는 주장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게시물(2)의 딥링크 내용은 신청인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성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특정인과의 친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게시물(3)은 신청인 부모가 신청인에 대해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 등이다.

이 딥링크 게시물들의 내용 구성은 다르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신청인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평판과 영향력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안이 사회성을 갖고 있으며, 표현 행위자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임을 보도의 형태로 표방하고 있고, 공개토론의 소재가 된다는 점 등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적 활동에 관한 정보로 신청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시조치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KISO 정책결정에서 볼 때,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익형량 관점에서 신청인의 사생활 적시로 인한 피해와 공적 관심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의 지위는 비판이 널리 허용돼야 할 주체로서, 신청인에 대한 게시물의 내용은 공적 관심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딥링크한 원천 게시물이 여전히 특정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채널명으로 지금 시점에도 게재되고 있는 점도 게시물의 공적 관심사를 대변한다. 원천 게시물을 두고 이를 링크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책임의 비중과도 비례하지 않는다.

(2) 명백한 허위사실 소명과 악의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

위의 조건이 충족됐다면, 신청 게시물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소명이 됐는지,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 이론은 미국으로부터, 상당성 이론은 일본 법리로부터 도입된 개념이다. KISO는 법원의 면책 논리를 내용 심의에 반영해서 적용해오고 있다. 이 조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딥링크된 게시물이 언론성을 갖는 보도물이라는 점과 우리 법원이 보여준 악의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결 기준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물에 면책기준으로 악의성과 상당성 이론을 도입했던 첫 판결은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해서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는 상당성의 인정범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 사건별로 관련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에서는 1) 믿을 만한 자료의 여부, 2)보도의 시급성, 3) 피해자와의 대면 등 원천 자료에 대한 접근 여부 등 내용 구성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재판 과정에서 보도 과정에서의 자료수집과 목적 명시, 기사 구성 형식과 인용된 정보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성과 상당성의 이러한 기준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KISO의 해당 정책규정은 임시조치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명예훼손 면책 법리를 가져와 신청인의 신청서만으로 악의성과 상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KISO는 심의결정문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게시물에서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소명이 어렵고, 특히 판결 등 공적인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며, 허위사실에 대한 소송 제기나 형사고소, 언론 중재 또는 조정 신청 등의 부존재를 소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청되지만, 단

지 그 요청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을 소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KISO는 입증책임으로 공적 근거자료의 제시와 함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입증책임을 위한 명시적으로 노력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KISO의 결정 취지는 공인의 임시조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일부 딥링크 게시물에서 다루고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허위 입증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KISO는 해당 규정을 만들 때 누구라도 확인 가능한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자료를 통한 허위 입증을 전제로 했지만, 신청인의 사생활 영역의 표현들은 그 사안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표현자가 사안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이번 심의안건에 대한 KISO의 심의결정문은 관련된 법원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KISO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 그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또한 정치인에 대한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그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답링크된 게시물의 경우, KISO가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 ‘악의성’과 ‘상당성’ 논리를 적용해서 임시조치 여부를 내리는 것은 그 입증 한계 등으로 인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에서 원 게시물인 언론보도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민·형사소

송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중재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형식적 논리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3. 결론

KISO의 이번 심의결정은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을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KISO의 정책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에 기반해 법리적 철학과 원칙을 잘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과정과 임시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KISO의 권한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입증책임의 범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기관 명칭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김학웅 /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ragnarok21@empas.com)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OOOOOOOO의원은 2018. 10.에 기존 OOOOOOO를 인수하여 2014 ~ 2015년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관검색어 [OOOOOOOO] - [OOOOOOOO 유명수술] - [유명수술] - [OOOOOOOO 유명수술] 노출로 인하여 환자들이 병원으로 사실 규명에 대한 문의를 쇄도하고 수술예약 취소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므로 KISO에 해당 검색어 삭제 심의 상정을 요청하였다.

나. 관련 조항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다. 심의 결과

(1) 신청인 적격 관련

‘OOOOOOOO병원’ 원장은 2016. 4.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7. 위 원장 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은 2016. 4. 기소되어 4년째 재판 중인 위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 12. 열린 것이 원인이고, 이를 계기로 2019. 12. 14. KBS에서 유명수술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중 ‘OOOOOO OO’은 ‘O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OOOOO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서’에서 ‘OOOOOOOO의원’은 개설자 및 구성원이 ‘OOOOOOOO병원’과 전혀 다르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두 의료기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OOOOOOOO’은 ‘O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신청인을 지칭하는 ‘OOOOOOOO의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은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위 (1)항에도 불구하고 ‘OOOOOOOO’을 신청인으로 보아 가정적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실제 판단(신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의 당부)에 대해 판단해 본다.

(가) ‘OOOOOOOO’ 상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 감수 여부

의료법의 취지상 의료기관의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OOOOOOOO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OOOOOOOO병원’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양 의료기관의 명칭 중 ‘병원’과 ‘의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OOOOOOOO’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고, 신청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 ‘OOOOOOOO’이라는 명칭을 이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

고 있고, ‘OOOOOOOO’이라는 표현을 의료기관의 상호로 사용할 당시 이미 ‘OOOOOOOO 병원’이 의료사고 및 의료법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OOOOOOOO’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 해당 여부 -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하여 ‘OOOOOOOO’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OOOOOOOO O병원’ 원장에 대한 민사소송이 원장의 항소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형사사건 역시 2019. 12. 12. 열렸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여전히 언론보도에서 다룰 만큼 공적 관심사다.

(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해당 여부 - 현저한 오인 여부

‘OOOOOOOO’은 ‘OOOOOOOO병원’이 해당 의료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 경력 및 실적에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OOOOOOOO병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해당 의료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이 낮은 신생 의료기관인 ‘OOOOOOOO의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OOOOOOOO’은 ‘O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OOOOO 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은 ‘O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OOOOOOOO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 형사 소송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OOOO’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OOOOOOOO병원’의 명성을 활용해 더 많은 환자의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OOO’은 ‘O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OOOOOOOO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 해당 여부 -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신청인은 ‘OOOOOO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므로 자연인을 전제로 한 사생활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의 경우, ‘OOOOOOOO’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주체는 ‘OOOOOOOO병원’이므로 ‘OOOOOOOO의원’에 재산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OOOOOOO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OOOOOOOO’과 관련한 연관검색어로 인하여 ‘OOOOOOOO의원’이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입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가. 신청 적격 관련

‘OOOOOOOO병원’과 ‘OOOOOOOO의원’이라는 명칭을 살펴보면, 병상 수로 병원과 의원을 구분한다는 의료법의 내용을 모르는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의원’이 아니라 ‘OOOOOOOO’가 중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억울함도 이해가 되긴 하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 - 특히나 법적 판단 - 을 함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이 실시하는 논리 전개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OOOOOOOO’가 중요하더라도 법적 입장에서는 두 의료기관이 모두 ‘OOOOOOOO’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양자를 구별 짓는 중요한 법적 개념 요소로 ‘병원/의원’과 그 실제적 차이(개설자 및 구성원이 다름)를 꼽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나. 신청의 당부(=실체 판단) 관련

결정문은 신청인 적격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실체 판단을 하였다.

(1) 신의칙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결정문은 <신청인은 ‘O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OOOOOOOO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OOOO’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OOOOOOOO병원’의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자의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OOOOOOOO’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신청인이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에 위반한 주장을 하고 있음

을 명쾌하게 실시하고 있다. 손이 손을 지켜야 하는 법(Hand Wahre Hand)이니 당연한 것이다.

(2)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결정문은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문제이고, 따라서 규범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의 기준으로 민, 형사소송의 계속 여부 및 언론의 관심사인지 여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3) 현저한 오인 여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환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O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을 오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그 결론(‘OOOOOOOO병원’과 ‘OOOOOOOO의원’ 사이에 현저한 오인 가능성은 없다.)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검색어의 (검색결과로의) 유인 기능,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광고심사지침> 및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는 내용을 실시한 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연관검색어만으로는 환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신청인을 지칭하는 ‘OOOOOOOO의원’과 ‘OOO

OOOO병원’을 현저하게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더 세심한 논리를 구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여부

사생활침해는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 결정문은 깔끔한 논리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만일 신청인이 ‘OOOOOOOO의원’이 아니라 ‘OOOOOOOO의원’ 대표 원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소결

성형외과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을 쌓아왔던 ‘OOOOOOOO병원’이 각종 법적 문제로 인하여 송사에 휘말리고 언론의 조명을 받은 후 새롭게 성형외과를 개설하려는 입장에서 ‘OOOOO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연계 될 이익과 불이익을 숙고한 후에 ‘OOOOOOOO의원’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관검색어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문의전화와 수술예약의 취소도 빚발쳤을 것이다. 신청인의 억울함도 이해는 되지만, 결정문이 실시하고 있듯이 그러한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생각으로 ‘OOOOOOOO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기에 규범적 판단은 결정문과 같을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도 있지 않은가? “양손에 모두 떡을 질 수는 없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박원재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책본부장
(pwj@nia.or.kr)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가. 배경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세계가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인류의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한국의 견실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K-방역'은 세계적인 표준이 되며 희망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기반한 흉부 엑스선(X-ray)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판독 해석

은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관련 의료 자원 집중을 지원해 확진자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와 관련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전염경로와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밖에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과 진단키트, 코로나 마스크 앱을 통한 공적 마스크 수량 실시간 확인 등은 IC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데 충분했다.

ICT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ICT를 통해 새로운 도래할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매킨지 등의 보고서를 통해 ICT 관련 정책이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재편될 국가사회 질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응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의 핵심 키(key)가 될 것이다.

나. 주요 변화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미디어 콘텐츠, e-커머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대면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간 디지털화를 통해 진행돼 온 결과이다. 특히 한국에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개인과 사회 곳곳에 보급돼 있는 디지털 인프라 및 역량의 축적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는 디지털화 속도와 범위를 급격하게 빠르고 넓게 만들었다. 비대면 문화 등의 확산과 같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람 간의 직접 접촉이 최소화되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으로 명명되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가 촉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와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문제가 각국이 당면하게 될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코로나19의 피해극복과 디지털 격차 해소의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되는 심각한 현안을 겪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경제·사회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Bond Capital, 메리 미커 (Mary Meeker)	① 코로나 종식 후 경제 대책 마련, ② 바이러스 전염 완화 대책 마련, ③ 글로벌 협력 대응, ④ 기술 전문가의 중요성 확대, ⑤ 일과 삶의 균형 재정의, ⑥ O2O 트렌드 가속화, ⑦ 온디맨드 서비스, ⑧ 기술 기반 사회 안정화, ⑨ 디지털 헬스케어, ⑩ 스포츠 환경, ⑪ 코로나를 변화동력으로 회복방안 모색
Forbes, 버나드 마 (Bernard Marr)	①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 작용 증가, ② 디지털 인프라 강화, ③ IoT·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 ④ AI 기반 의약품 개발, ⑤ 원격진료, ⑥ 온라인 쇼핑 확대, ⑦ 로봇 의존 증대, ⑧ 세미나·행사 등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화, ⑨ e-스포츠
IDC 중국	① 정부 관리 시스템의 기능화 및 현대화, ② 도시 클러스터와 중심도시의 분산, ③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발전, ④ 비접촉 연계 비즈니스의 흥행, ⑤ 중국+1 글로벌 공급 체인 전략 가속화(생산기지 이전 및 확장)

[표1] 코로나 이후 변화 예측 (자료출처=NIA)

2. 코로나19가 안겨준 과제

가.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

먼저 팬데믹 하에서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대응과 회복탄력성이 요구된다. 코로나는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인적·물적 교류를 폐쇄할 것이다.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으로 인해 구제의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확산은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기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게 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에 힘입어 실시간 정보제공 및 확진자 접촉자 파악 등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보였지만, 교육계는 정반대의 상황 맞이했다. 초·중·고 대학 모두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장기간

외면당한 디지털교과서·사이버 학습 등 ICT 인프라 투자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¹⁾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업무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인프라와 역량(투자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구제의 공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문화가 부상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며 불가역적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추세로, 사회 전반이 비대면 환경으로 강제 전환 중이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ICT 인프라 강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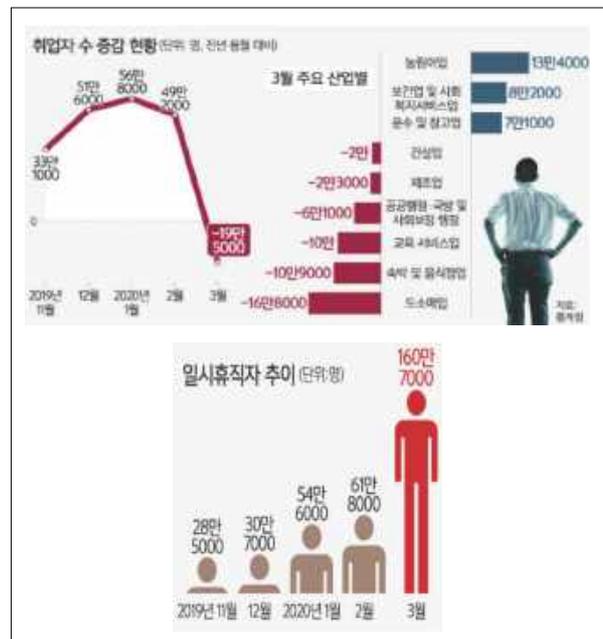
나. 경기부양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 등 국내외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은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 붕괴(일자리 감소, 소비감소 등에 따른 기업 도산 등), 소비심리 급락, 유가 폭등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전 세계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하며 시장 자체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촉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대 봉쇄(Great Lock down)’로 명명한 바 있으며, IMF 수석 경제학자 지타 고퍼나스는 “지금의 대 봉쇄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전 경제위기와의 차별점은 금융기능의 마비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아닌, 소비, 외식, 출근 등 ‘일상의 마비’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라는 점이다. 즉 일상의 봉쇄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다.

특히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고 실업 대란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자부하던 미국도 고용 충격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2] 코로나19 고용쇼크 현황²⁾

다. 격차해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는 사회 제반 영역에서 격차 확대 가능성 증폭시켰다. 모든 위기

1) 서울경제(2020.3.1.). 부랴부랴 온라인 학습? 교과서조차 없다. Available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3RY1V0>
 2) 세계일보(2020.4.18.). 일시 휴직자 역대 최대...청년 취업·서비스업 직격탄.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7520220>

국면마다 극복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소득격차 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20년 1분기(1~3월) 국민 소비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³⁾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20.5.21.)'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천 원으로 전년 동기(306만1천 원)보다 5.98% 감소했다.

둘째, 교육격차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태블릿, 노트북 등 최첨단 인프라 보유 비율에서 OECD 평균 수준을 모두 하회했으며,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17만여 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⁴⁾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해 많은 업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며, 정보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젊은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게릴라성 마스크 거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반면, 노년층은 발품으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하는 양상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신청에서도 간편한 신청 절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

층이 있었으며, 같은 재난지원금임에도 제로페이 등을 통한 적립과 보너스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가.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코로나19 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인 2조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일본과 EU 역시 대규모 긴급 경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을 전후로 총 34조 위안 규모로 투자 규모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상이 반영돼 있다. 5G, 데이터센터, AI, 산업용 인터넷 등 7가지의 신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 (미국) 2,700조원(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통과(20.3)에 이어 추가적으로 2조 달러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추진 언급
	· (중국) 5,900조원(34조 위안)규모의 신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20.3)
	· (일본) 1,350조원(117조 엔)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1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기관 대출 실시
	· (유럽연합) 최소 676조원(5,000억유로) 규모의 EU 회복기금 창설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사업 투입 (20.5 논의 중)

[표3] 주요국 포스트코로나 정책(예시)

주요국 대부분은 경기부양책의 핵심 요소로 ICT 인프라를 꼽고 있다. 중국, 일본, EU는

3) 경북매일(2020.5.21.). 코로나, 사상최대 지출 감소·빈부 격차↑.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765>
 4) 서울경제(2020.3.19.). 20년 전서 멈춘 IT인프라..디지털교육 OECD '꼴찌'.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9DFQEVB>

디지털 인프라에 주목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나.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6월 한국판 뉴딜 청사진이 발표됐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일자리와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과 환경을 회복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치를 담았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뉴딜의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경제회복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경제혁신이다. 바운스백(bounce back, 복구적 회복)이 아니라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 전향적 회복)를 추구한다. 쉽게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디지털 뉴딜이 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디지털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다. 팬데믹 상황을 트리거로 이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경제·사회·교육·의료·행정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만의 고유한 ICT 강점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육성, 디지털 포용과 안전망 구축 등이 주요 전략으로 추진된다.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과 유선에서 무선으로 국가망의 기반을 통째로 바꾸는 5G 국가망 계획은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을 때마다 ICT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다.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코로나 방역 모델국가가 되었듯이, 디지털 뉴딜로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모델국가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속에 국가대전환의 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이 있다. **KISO JOURNAL**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김유향 / KISO저널 편집위원, 국회입법조사처
(ykim@assembly.go.kr)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정치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 정치체도로 인식되었던 민주주의는 현대의 대의제 정치 하에서 화석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 또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등장한 인터넷은 직접 민주주의를 용이하게 하여 현대 대의제 정치의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구원할 도구로 기대되어왔다. 이는 인터넷 등장 초기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장밋빛 기대의 배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감시사회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오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화의 확산으로

인간 세상의 모든 활동은 쉽게 노출되거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연결의 수단인 인터넷을 국가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역사와 전통의 민주주의 국가도 언제든지 쉽게 디지털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¹⁾

이처럼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상이한 견해와 전망이 여전히 팽팽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건 분명한 것은 디지털 기술혁신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작동의 정상성을 어느 정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공간은 허위정보, 봇, 정보알고리즘 등의 영향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글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혁신의 시대에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1) Justin Sherman, "Democracies Can Become Digital Dictators", *Wired*, 2020. 1. 5.

현 단계 디지털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소셜미디어 시대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와 미디어, 그리고 정보의 관계는 크게 변화해왔다.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과 시민의 온라인 정보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도 향상한다.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면서 소통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소통의 양이 증가하고, 오프라인과는 다른 방식의 다양하고 긴밀한 온라인 유대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신변잡기를 토로하거나 생활이슈를 논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적 의제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실제적 변화를 끌어낼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시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의식의 성장을 경험한다. 사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공적 연대로 발전하고 오프라인의 현실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정치에 있어 시민참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째, 정치 사회적 의사 표현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메시지 전달의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을 특징으로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전파가 용이하기에 한 개인의 의견도 소셜미디어를 거치면서 강력한 정치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원예의 독려가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도변화 및 입법을 청원하는 동원을 쉽게 할 수 있고, 정치가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시민과 주요 현안에 대한 즉각적 논의가 가능해진다.

둘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과 의견교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용자는 제공되는 정보의 단순한 수용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수집하며 그 과정 정보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스마트 시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가 소셜공론장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시민참여의 질을 향상시킨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소통되는 정보는 ‘공중의 관심사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시민의 정치 사회적 관여도를 증대시킨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과 사적 관계망 구축의 도구에서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그리고 선거 캠페인의 수단에서 일상의 정치를 관통하며,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 방향을 가늠할 주요한 매체로 부상했다. 1990년대 등장했지만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이며, 2012년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와 정치의 향배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물론 등장부터 소셜미디어는 이미 정치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실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을 비롯한 소셜 플랫폼 관련 기술의 진화와 뉴스 소비 매체로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로 인해 현대 정치과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등장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한편,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소셜미디어는 정보공유를

민주화하고, 고립된 개인들이 빠르고 쉽게 다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영향은 대중적이며 즉각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다. 전통적으로 신문·방송 등 전통언론의 의제 설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셜미디어로 이전됐다. 정치엘리트나 미디어가 독점하고 있던 의제설정기능이 파워트위터리안, 페이스북 인플루언서(Influencer), 나아가 일반 개인에게로 확장돼 가는 현상은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선택하고 공유하고, 시민들의 속의 주제를 결정하는 의제 설정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시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며, 이슈의 유통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통해 정치적 매개자 없이 선거 과정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²⁾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식되던 많은 측면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시민참여가 대표적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투표와 같은 제한적 정치참여로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히 전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등장하였으나, 실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징으로 인해 오랫동안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해금 즉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선거과정에서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목표는 선거 캠페인을 비롯한 선거 과정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활용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활용은 대의제하에

서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 등 집단을 정치의 영역에 참여시켜, 민주주의적 절차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 처음부터 선거과정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활용의 제약이 없었던 미국 등을 제외하고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 왔다.

3. 민주주의를 제외한 모든 것에 앱이 있다

실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입법 및 의회 그리고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시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많다. 특히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은 많은 국가나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영역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청와대의 ‘국민청원’,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영국의 전자청원, 대만의 ‘Join’, 프랑스 파리의 참여예산 플랫폼인 ‘madame Mayor, I have an idea’³⁾ 등이 대표적이다.

입법 및 의회에 대한 전자 입법(e-legislating) 플랫폼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Decide Madrid’, 브라질의 위키레기스(wikilegis), 그리고 대만의 ‘vTaiwan’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중 입법 및 의회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다양한 일회성, 단기적 시민참여 시도를 통해 발전해왔다. 2013년 아이슬란드의 개헌논의 과정 시민참여는 웹을 통한 입법과정 참여의 선도적인 사례이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금융위

2) 김유향, “제19대 대선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향과 특징”,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406호, 2018. 1. 9.

3) Paris Budget Participatif

기로 인해 내각이 사퇴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 부딪친다.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은행 도산은 은행들의 형사상 범법행위와 정치인·관료의 심각한 과실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에 의회에 대한 불신 문제를 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개헌안 작성을 직접 맡기기로 하게 된다. 이후 아이슬란드 의회는 시민들을 선출하여 별도의 개헌 의회를 구성해 개헌안 작성을 맡기기로 결정했으며, 개헌의회는 개헌안 내용을 인터넷으로 대중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헌법안을 작성하는 선도적 실험을 했다.

개헌의회는 웹 플랫폼을 이용한 피드백을 통해 개헌안 작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 웹 플랫폼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는 그대로 시민들로 구성된 제헌의회의 개헌안 심의에 반영됐다. 실제 개헌에는 실패했지만, 웹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들고 의회에 제안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 국가 단위의 개헌과정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⁴⁾ 이후 아이슬란드는 ‘더 나은 레이크아비크(betrireykjavik.is)’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유사한 경우로 2016년 멕시코시티가 자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 헌법 초안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을 활

용한 사례도 있다. 멕시코시티는 세계적 인터넷 플랫폼 ‘Change.org’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헌법 초안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 청원을 받아 반영⁵⁾했으며 또한 시민들은 ‘PubPub’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위원들이 작성한 헌법 초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초안은 실제 헌법으로 제정됐다. 멕시코시티의 사례는 시민들이 웹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의제 설정부터 초안 마련까지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정치적 시도이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시티 등의 경험에 기반해 이후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에스토니아의 ‘민중의회(Rahvakogu/People’s Assembly)’가 있다. 2012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시민의 저항이 커지면서 시민참여를 통해 정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주도로 원내 정당, 대통령실, IT·통신 전문가가 협력해 ‘민중의회 플랫폼’이 구축됐다.⁶⁾ 민중의회는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민중의회에서의 심의 그리고 국회 반영 및 법제화의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됐다. 당시 민중의회는 5가지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수렴된 시민 의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15개 법안 형태로 국회에 발의됐고, 이 중 3개 법안이 법제화됐다.

핀란드의 ‘열린내각(Avoim Ministerio / Open Ministry 2015)’은 시민단체이자 웹 플랫폼으

4) Gylfason, Thorvaldur. "From collapse to constitution: The case of Iceland." *Public Debt, Global Governance and Economic Dynamism*. Springer Milan, 2013.

5) Change.or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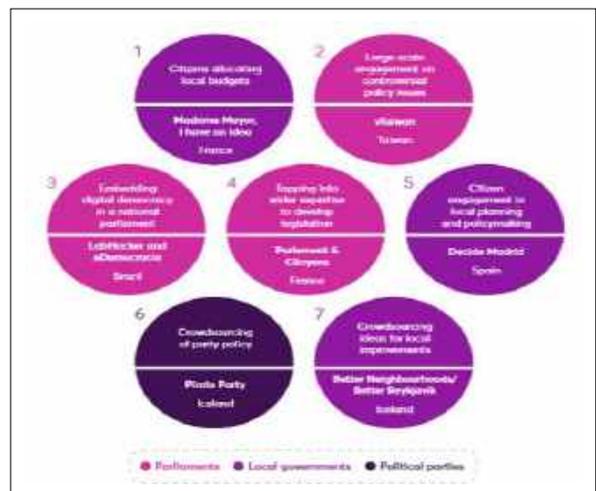
6) Praxis Centre for Policy Research, "People’s Assembly in Estonia - crowdsourcing solutions for problems in political legitimacy." 2014.

로, 시민이 제안한 입법 아이디어를 정교화하고 여기에 대해 동의를 모으기 위한 창구로 만들어졌다. 핀란드는 2012년 개헌 헌법에서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해 「시민발의법」이 제정되고, 이 기회를 이용해 시민단체이자 웹 플랫폼 열린 내각이 만들어졌다. 열린내각의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참여자는 열린 내각을 통해 입법 아이디어를 법안 화하고 지지를 획득하며, 완성된 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최대 6개월 간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 국회에 회부된 후에는 「시민발의법」에 따라 정부발의안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핀란드의 열린내각은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 8월에 오픈한 스페인의 'Decide Madrid'는 16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고, 토론을 거쳐 투표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면 참여자들은 지지(Support)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마드리드 시민 1%의 공감을 얻으면 이 제안은 플랫폼의 상단에 게시되고, 45일간의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에 부쳐진다.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시의회가 한 달 안에 예상 비용과 적법성,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대의제 정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그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대의제민주주의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대의제 정부가 협력해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

운 정치과정이자, 시민이 일상적으로 대의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의미는 단순한 의견 개선의 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정책과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데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대의제 하의 시민감시의 한계와 대의제의 대표기능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구현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더 다양한 실험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주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유형⁷⁾]

4. 디지털 민주주의의 미래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치참여 앱과 웹 플랫폼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나 법으로 체계화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민들 모두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됐다고 해서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7) Julie Simon, Theo Bass, Victoria Boelman and Geoff Mulgan, *Digital Democracy The tools transforming political engagement*, February 2017.

아니고,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과 지역사회나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젊은 층의 정치참여 증대나, 유권자 등록의 증가, 선거 참여의 증대는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보다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실시간 표명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으나, 실제 소셜공론장에서 표출되는 담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숙의를 반영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⁸⁾ 오히려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리고 참여적 특징보다는 시민의식 같은 내재적 변인이 시민참여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도 여전히 강력하다.⁹⁾ 나아가 빠른 속도로 기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에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매체의 특징도 다양하므로 소셜미디어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의 영향을 하나로 특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이미 봇에 점령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허위정보로 인해 소셜공론장으로서의 각종 디지털플랫폼의 역할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⁰⁾ 봇은 변화하는 뉴스 습관, 온라인 담화와 가짜뉴스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¹¹⁾ 실제로 인기 웹사이트에 대한 트윗 링크의 66%가 인간이 아닌 자동화된 봇에 의해 게시되고 있다. 봇은 소셜미디어

의 정치적 담론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온라인 평가 및 검토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정밀 맞춤형(micro targeting) 광고, 암흑광고(dark ad) 등이 여론조작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가짜뉴스(fake news)의 사례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참여 앱과 정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온라인 의견수렴의 입법 절차상의 위상이 여전히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해외 사례에서 플랫폼은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의 일부분일 뿐 반드시 그 내용이 그대로 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전문성이나 형식 면에서도 보완이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여 수렴한 입법안도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이나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한 선출기관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렴된 의견에 어떤 위상을 부여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를 두어 입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에스토니아의 예처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기존 제도적 통로를 이용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시민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차별적 참여가 오히려 일부의 이해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투표와 달리 디지털

8) 'The birth of digital democracy', *the Atlantic*.

9) 윤성이, 「소셜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 의식의 변화」, 『한국정치연구』 21권 2호, 2012.

10) 봇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계정

11) Stefan Wojcik, Solomon Messing, Aaron Smith, Lee Rainie & Paul Hitlin, Bots in the Twittersphere, April 9, 2018; 'What is a self-service government', *the Atlantic*.

털 플랫폼에 기반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교육, 지역, 수입,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낮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국가에서 더 실현 가능한 방식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많은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고 활용되며, 많은 나라에서 이미 ‘캠페인 테크(Campaign Tech)’라는 선거 박람회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인터넷 기술의 정치 및 선거 과정에서의 활용은 오히려 기존 정치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보완 방법으로 IT기술이 활용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미지 정치, 감성적 민주주의가 더 가속화되면서 현대 세계적 파퓰리즘 현상

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많다. 나아가 넘쳐나는 각종 플랫폼과 정보 속에서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정보 편식으로 이어지면서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단절되는 여론의 양극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허위 정보와 이미지 정치의 만연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는 오히려 더 요원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험은 소셜미디어와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각국에서 다양하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변화된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디지털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KISO**
JOURNAL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hkyungkim@seoultech.ac.kr)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2조의7).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92조제1항). 둘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2조의8). 이를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4조제3항).

이 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국회 내부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우선 수범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다. 서비스 안정 수단은 트래픽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SKB·KT 등 ‘망 사업자’인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¹⁾ 설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범자라 할지라도 대용량 트래픽의 주범이 주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망 사용료만 증대시켜 글로벌 해외사업자와 경쟁하는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통신사의 수익에만 일조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히 법 통과를 촉구하였고, 20대 국회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1) 제37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4-25면, 박성중 의원 발언 내용 참조.

2. 넷플릭스법의 추진배경



이 법의 추진 배경을 이해하기에 앞서, 망 사용료의 지불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영향력 있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 Provider & Application Provide, 이하 “CAP”라 한다)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할수록 국내 망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는 값비싼 국제망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ISP는 국제망 1계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망과 접속해야 하고 중계접속 비용 등 값비싼 접속 통신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제망 1계위(Tier-1)사업자는 다른 망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자사의 필요에 따라 무정산 상호 접속만으로 완전한 연결(Full Connectivity)이 가능한 ‘네트워크(망)사업자’ 집단이다. 미국은 다수의 1계위 망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스페인 등도 1계위 망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계위 망 사업자가 없으므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값비싼 중계접속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ISP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망 접속료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구

글·페이스북 등 인기 있는 글로벌 CAP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연이나 끊김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그 결과 국내 ISP는 캐시서버³⁾ 라는 타협안을 찾은 것이다. 캐시서버로 인해 글로벌 CAP는 사용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CAP는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최근 몇 년간 망 사용료 논쟁을 계속해왔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 중계접속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는 이미 구글 등이 취하고 있듯이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⁴⁾ 실제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과 딜라이브 등은 넷플릭스와 캐시서버 방식의 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캐시서버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진행될수록 방통위의 판단이 SK브로드밴드로 기운다고 판단한 넷플릭스는 해당 재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망 사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중재를 기다리는 것보다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2) https://en.m.wikipedia.org/wiki/Tier_1_network 2020년 7월 25일 최종확인.

3) 구글 글로벌 캐시(Google Global Cache; 이하 GGC)는 우리나라 통신 3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해외망이 부족했던 LG U+가 2012년, 그 뒤로 2013년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후 2015년에 KT가 GGC를 도입하였다. 이미 망 사용료 논란 이전에 구글은 국내 통신 3사에 GGC를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GGC의 설치·유지비용/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이러한 캐시서버로 인해 구글은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 OCA) 일환으로 2012년부터 전 세계 넷플릭스 파트너에 캐시서버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러한 사태에 대응해 일각에서는, 국내 CAP들이 고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건만, 해외 사업자는 무임승차 하려 한다는 역차별 구조를 부각시키며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시키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법이 통과된 것이다.

3. 넷플릭스법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이 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결국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이용자(End- User)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과는 달리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은 유료 콘텐츠 제공 서비스다. 법 개정기에 따라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한국의 통신소비자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매우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건만⁵⁾ 결국 더 높은 콘텐츠서비스 이용료까지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이 법의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은 ISP의 수익구조 개선뿐이다. CAP는 망 사용료라는 비용 증가를 겪어야 하고, 이러한 부담은 최종이용자에 대한 요금 증액으로 전가될 것이다. 최종이용자는 넷플릭스라라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재가 마땅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증액 요금을 수용할 수밖에

에 없다. 나름 경쟁재로 등극하고 있는 웨이브(Wavve)나 왓챠의 가입자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외출이 제한된 코로나19 사태에서 OTT는 이제 거의 준필수 여가재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다음으로 해당 규정이 망 강매의 근거가 될 우려이다. 반드시 어떤 설비 이상을 갖춰야 한 다든지, 어떤 설비를 두도록 하거나, 망 트래픽 최대 폭의 얼마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망 사용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현재도 한국 CAP는 뉴욕 대비 4.8배, 파리 대비 8.3배 정도의 높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KT의 전용회선 요금이 미국 AT&T 대비 약 85배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된다.⁶⁾ 왓챠 등 국내 OTT는 이제 간신히 서비스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공략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국내 CAP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규제입법은 이미 수많은 혁신 서비스가 가라앉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2004년 유튜브보다 먼저 오픈한 세계 최초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판도라 TV’, MP3플레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한 ‘디지털캐스트’, 2000년 초 벤처 붐을 일으킨 새롭

5) 일 총무성의 조사결과 데이터 용량이 2GB인 경우 뉴욕이 5990엔(약 5만99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3504엔(약 3만5040원)으로 두 번째였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72954> 2020.7.25. 확인)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헬은 최근 ‘2018년 상반기 LTE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LTE 데이터 요금은 핀란드의 70배 수준이며 세계 41개국 중 2위라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모바일 요금제 수천 개다. 무료 음성통화 1000분 이상을 제공하면서 속도가 3Mbps(초당 메가비트) 이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를 조사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48&code=11151400&cp=nv> 2020.7.25. 확인)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통신사는 비교기준이 잘못됐다는 등 부정확한 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한국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2017년 정관에 따르면 전용회선료 비용이 KT는 1Mbps당 월 85만 원, SKB sms 10Mbps당 363만 원, LGU+는 10Mbps당 월 419만 원이나, AT&T는 10Mbps당 약 10만 원이다. 박경신,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 중립성, 슬라이드 11,13, 오픈넷 & 체감규제포럼 ‘상호접속고시 개정 방안 특별세미나’, 2019.11.7.

기술의 ‘다이얼패드’, 도토리 광풍을 일으킨 ‘싸이월드’ 등 혁신적 토종 플랫폼 서비스의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일부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체 경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터넷 실명제 등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가 큰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가장 핵심적 우려는 이 법이 현실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기업에 적용 및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의 취지에 따라 넷플릭스 등 무임승차를 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면, 이미 이용자 기준 해외 사업자의 트래픽이 절반(67.5%)을 넘어서는바, 국내 CAP의 망 사용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존의 글로벌 CAP 사업자에 대한 캐시서버 설치방식이 불가피하게 유지된다면 결국 이 법은 국내 CAP의 망 사용료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국경의 개념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완전히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어 지원을 중단하는 정도이고, 결국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정부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목으로 시정조치로서 ‘접속차단’을 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한국 ISP에게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외의 모든 사이트에 대하여 접속차단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조차 안 되어있는 넷플릭스에게 과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조차 회의적이라는 공방이 오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⁷⁾

구분	SKT			KT			LG+			총계		
	국내	국외	계									
사업자	5	5	10	5	5	10	4	9	10	-	-	-
트래픽%	1,503	2,606	4,109	418	1,006	1,424	721	1,873	2,594	2,642	5,485	8,127
	36.6%	63.4%	100%	29.4%	70.6%	100%	27.8%	72.2%	100%	32.5%	67.5%	100%

[표1] 각 분기 중 특정 1주일동안 LTE 트래픽 측정해 평균한 1일 수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출처=조선비즈)

4. 나가며

기원전 753년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도로 건설’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군사·문화·경제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도록 ‘연결’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지리적’ 연결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적’ 연결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일상인 시절이 왔다. 페이스북은 23억8000만 명을, 유튜브는 18억 명을 연결한다. 중국 14억 인구보다도 월등하며, 미국 3억 인구는 비할 게 아니다. 중국의 틱톡(5억 명), 시나 웨이보(4억6500만 명) 역시 ‘연결’을 추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대부분이 시가총액 20위권 기업임에 비춰 볼 때 결국 ‘데이터’와 ‘인적’ 연결에 성공한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도로’없이 로마의 융성이 불가능 했듯이, 빠르고 값싼 ‘연결’ 없이 디지털 경제의 융성은 불가능하다. 국가의 법 정책이 이러한 연결을 증대시키며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넷플릭스법이 우리의 연결과 연결로 파생되는 부가가치 극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넷플릭스법의 시행에 맞춰 정부가 개정 작업을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내용이 중요하다. 망 사용료 인상 등 사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규정돼선 안 될 것이다.

7) 제37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23-25면, 박성중 의원 발언내용 참조.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구본권 / KISO저널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재택근무가 업무방식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며 “5~10년 내 전 직원의 50%가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5000여 명의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의 토비 루트케 CEO도 “사무실 중심주의의 시대는 끝났다”며 “내년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영구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포털, 게임사 등 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SK그룹, CJ그룹, 롯데지주 등 대기업들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속속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방지, 건물 폐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많은 기업으로 확산됐지만,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경험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점점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

다. 재택근무는 어떻게 뉴노멀의 지위를 얻게 됐을까.

재택근무의 빛과 그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예고 없이 전면 도입된 재택근무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허물었다. 날마다 출근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 차질 없이 업무가 진행될 뿐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출근할 때와 달리 재택근무에서는 분명한 업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 노동강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다. 이미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무 테이블을 직장 책상에서 집안 책상으로 바꾼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택근무를 했더니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얘기는 재택근무가 효율성 위주의 근무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대기업과 정보기술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준비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재

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업무 프로그램, 하드웨어, 보안 환경 등이 준비되지 않고 가이드라인 없이 임시방편 형태로 진행된다 보니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직원들이 재택 환경에서 근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감시 프로그램이나 수시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상사의 메신저, 상세한 업무일지 요구는 전에 없던 업무 스트레스 환경이 됐다. 집안에서 일하지만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성과가 분명치 않아 재택근무가 노동강도를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성공적인 재택근무의 조건

직장의 공간과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각자의 환경에서 컴퓨터로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직무라는 여건이 재택근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지만, 필요조건일 뿐이다. 재택근무의 성공적 운영은 기업과 직원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택근무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경우의 상당 부분은 기업과 직원들이 준비와 선택의 여지없이 전면적으로 반강제적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는 점이다.

재택근무가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의 업무 시스템인 만큼, 기존의 직무를 성과 위주로 재평가해서 규정하는 직무기술서가 필요하다. 기업과 직원이 합의하는 직무기술서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와 기대를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재택근무의 효과’ 연구를 발표한 니컬러스 블룸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재택근무가 긴 통근시간을 줄이고 사무실 정치를 없애는가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

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어린 자녀 △공간 △프라이버시 △선택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율성을 위한 팁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업무를 볼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팁들이 있다. 화상전화를 하지 않는 직무여도 실내복 차림으로 일하지 말고 외출이 가능한 옷차림으로 근무해, 스스로 업무 시간과 비업무시간을 구별하는 게 좋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랜 가택연금 시절 날마다 아침 9시면 양복을 입고 안방에서 거실로 출근했다는 일화가 좋은 사례다. 업무시간에만 컴퓨터와 메신저를 켜놓고 업무시간이 지나면 일과 단절되는 환경을 집안에서 만드는 게 추천된다.

전문가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별 일정표를 만들어 각자가 특별히 바쁜 시간을 서로에게 알려줄 것과 집안에서도 업무 시간과 업무공간을 설정할 것을 추천한다. 재택근무의 확대로 노트북, PC, 모니터, 화상카메라, 모니터 거치대, 편안한 의자 등 관련 용품의 판매가 늘어났는데 집안 일부를 업무공간으로 꾸미는 홈오피스 인테리어 수요가 생긴 점도 흥미롭다.

하지만 효율적 재택근무가 ‘홈오피스’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문화와 관계다.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지 않고 업무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지만, 지속적인 재택근무를 위해선 집안에서 평등한 근무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 한스 뵘클러 재

단의 연구에 따르면 전일제로 일하는 남녀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 집에서 추가적인 가사 업무가 생길 경우 대부분 여성의 몫이 되고 남성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니컬러스 블룸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 시간 교사’라는 추가 직무를 맡기고 있다”며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택근무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부가된 돌봄 노동과 가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사무실-재택근무를 넘어선 미래 업무방식의 과제

온라인 재택근무는 불필요한 출근시간과 사무실에서의 비효율적인 시간을 없애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근무체제로, 긍정적인 측면이 조명되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업무방식’은 뜻하지 않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다. 개인별 업무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직원들 간의 실적 격차가 커지고, 필수 인력과 비필수 인력으로 구분될 우려가 생겨났다. 효율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기업들은 기존에 사무실을 유지하며 수행해오던 업무 상당 부분을 재택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일부 직무와 직원들이 감축되는 고용 축소 현상이 우려된다.

또한 직장 출근은 업무를 하는 시간이자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직장에서 사람들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재택근무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컴퓨터와 온라인을 통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상당 부분을 차질 없이 재택근무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직장이 수행하던 ‘업무 외 영역’이 사라지면서 재택근무가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가 드러났다. 비업무적인 소통과 관계, 업무시간 중의 휴식, 그리고 만찬 피우기 등이다. 근무시간 내 비생산적 활동이었던 요소들로 여겨졌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 가치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세 가지 활동은 직장 근무시간 내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지지만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직장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자연스럽다. 이때 동료들과 비업무적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생각들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충분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은 재택 문제에서 더욱 중요해졌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잡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택근무의 어려움 중 하나는 직원들이 경험하는 단절감과 외로움인데, 외로움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영국 BBC는 지난 3월 13일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의 바버라 라슨 교수는 “아침마다 상사와 10분간 전화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라”며 재택근무 환경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권했다. BBC는 재택근무가 길어질수록 동료들과 비업무적 대화를 더 자주 나눠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다.

일찍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업무적 소통인 잡담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오픈소스 기반의 온라인 협업 도구 개발 플랫폼 기업인 깃랩(GitLab)은 업무를 기본적으로 온라

인 재택근무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업무 중의 잡담을 장려하는 게 특징이다. 이 기업에서는 오히려 잡담은 구성원들의 ‘의무’다. 챗봇이 하루 30분씩 무작위로 잡담 대상자를 선정한다. 깃랩이 잡담을 권장하는 이유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IBM이 원격근무를 중단시킨 이유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일상으로 들어오기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 도구를 활용한 원격 업무를 시행해온 사례는 재택근무에서 중요한 비업무적 영역의 가치를 알려준다. 대표적인 기업이 사무용 정보기술 기업인 IBM이다. IBM은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이라는 기업명이 말해주듯, 일찍부터 자사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확산시켜온 대표 기업이다. 원격근무는 사무실 유지비, 교통비가 필요 없다는 효율성을 내세웠다. IBM은 2009년만 해도 직원 38만 6000명 중 40%가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원격근무를 했다. 그런데 IBM은 2017년부터 방침을 바꿔 직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정책을 변경했다. 야후의 CEO 마리사 메이어도 2014년부터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금지했다. 직무 특성상 온라인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인터넷 기업이지만 야후의 메이어는 “복도와 구내식당에서 벌어지는 토론이 최선의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며 사무실 출근으로 선회했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한 일일수록 우연한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이 분야의 정설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의 설립자이기도 한 스티브

잡스는 최후의 작품이 된 도너츠 형태의 애플 사옥을 지으면서 직원들 간의 우연한 만남과 소통을 극대화하려 했다. 그는 1998년 픽사의 사옥을 지을 때도 독특한 건축 철학을 구현했다. 애초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하나의 커다란 건물을 짓기로 하고, 남녀 화장실 4개, 회의실 8개, 카페, 식당을 모두 거대한 중앙 로비에 몰아넣었다.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크게 늘린 비상식적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잡스는 일부러 전 직원이 수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했다. 잡스는 화장실이나 식당을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창의성이 피어난다고 믿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열린 사무공간과 다양한 종류의 간식과 세계 각국의 별미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안마 서비스 같은 사내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얼마든지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이지만, 직원들이 최대한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다양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뉴노멀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방식의 업무와 소통 방식의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나 효율성 위주의 재택근무 접근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비생산적 활동과 우연한 만남을 통한 만족과 창의성의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KISO JOURNAL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김병일 / KISO저널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byungil@hanyang.ac.kr)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는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될 비대면 관련 부문별 대응방안과 재정 등 거시적 대응 방안부터 사회 및 공공부문과 산업부문별 대응 방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종합분석 하고 있다. 종합보고서의 특성상, 개별 대응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필진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필한 개별보고서나 대응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영문 제목은 ‘COVID-19 : How We Are Handling the Outbreak’이다. ‘Outbreak’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사고·질병 등의) 발생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에 초점을 두고,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사회의 대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과 입법 대응에 대해서는 숙제만을 던져 주고 있다. 보고서는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와 국내외 봉쇄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으로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역량 내지 투명성 강화 문제, 국제 공조를 사실상 저해하는 특정 국가들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인 점에서는 아쉽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요국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대응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궁금한 점은 보고서가 위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다. 유럽 국가 중 ‘집단면역’을 선택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모범 대응 국가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대만이나 뉴질랜드의 대응 체계를 포함시켜 분석했다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가별 대응전략의 스펙트럼을 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 현황에 전반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그 대응 입법과 조치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고서 발간 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응 입법과 조치가 한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 별도의 이행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4월1일에 발효된 독일의 ‘코로나19 위기 완화를 위한 법률¹⁾의 경우, 초안이 지난 3월 23일 내각의 의결을 거쳐 24일 연방하원(Bundestag)에 제출됐고, 그 초안은 같은 달 25일 연방하원을, 다음날인 26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연방상원(Bundesrat)을 각 통과했으며, 3월 27일 법률로 공포되어 4월1일 발효됐다. 법안 제출과 법률로 공포되는 일자별 과정을 보면,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코로나19법에 포함돼 있는 민사에 관한 계약법을 소재로 해 민법시행법(EGBGB) 제240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 계약적 규율’이라는 제목 하에 총 4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계약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을 완화한 특별법으로 공평한 부담분배의 관점에서 소비자와 영세업자 및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시법이다.²⁾ 코로나19 대유행을 대응하기 위한 독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공조와 원칙과 예외 적용에 대한 법령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접근 방법은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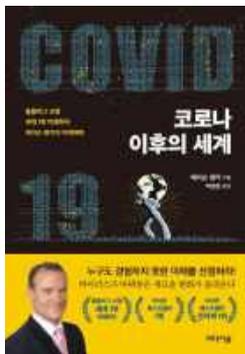
보고서는 재정 및 공공부문, 사회부문 그리고 산업부분별 대응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제한적인 지면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소개하고 있는 대응방안 중 상당수 과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개선이 요청되는 것이었거나, 예측이 가능한 미래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존재한다. 코로나 19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확산의 우연한 계기가 되었을 뿐 새로운 사회의 일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비대면, New Normal 사회로의 진입을 촉발한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입법은 과도한 규제와 특징인 또는 분야에 대한 ‘과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KISO JOURNAL

1)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민사, 도산 및 형사절차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vom 27. März 2020, BGBl I 2020, 569)이다.

2) 코로나계약법의 자세한 설명은,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121면 이하 참조.

제이슨 쉐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김국현 / 에디토이 대표
(goodhyun@editoy.com)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도 몇 달,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 버렸다. 언젠가는 이 사태가 끝이 나겠지만,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누구나 알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 제이슨 쉐커는 코로나 이후 변화할 세계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재빠른 스케치를 보여준다.

“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이 책은 거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로 인해 벌어질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가 미국인이니만큼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미국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방역이 잘 되었고 강제적인 봉쇄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

상황과는 체감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니만큼 미국의 변화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로 퍼져나갈 것이므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저자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키 중 하나는 원격근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던 원격근무를 확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저자는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원격근무의 확산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일상적인 근무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의 경쟁력이 늘어나고, 필수 노동자가 아닌 현장 근무 인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저자는 의료 서비스업, 유통망 관련업 등 필수 노동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전망의 직업이 되리라 예측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원격근무의 확산, 즉 통근

수요의 감소가 에너지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원격근무의 확산이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와 직주근접의 아파트보다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강제적 완전 봉쇄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의 체감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생각보다 빨리 재택근무 실험을 하게 됐고, 이는 역시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원격근무가 가능하거나 더 적합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교육의 미래 역시 온라인으로 옮겨버린다. 저자는 기존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중세의 길드 시스템에 비유하며 온라인 교육은 이 길드 시스템을 해체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대학에서 네트워크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교육을 두 번째 가치로 본다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비싼 학비를 지불할 마음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사실 온라인 교육은 상당 기간 이야기돼 온 주제다. 특히 학교에서 사회성 함양과 생활지도 등의 필요성보다 지식의 전달이 중시되는 대학 이상의 성인 대상 교육에서 더욱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그동안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MOOCs가 기존의 대학 교육을 대체하거나 실제로 위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강제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학기에도 예전처럼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저자의 주장처럼 교육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교육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리라 기대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다. 저자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양적 완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주택담보부 채권, 회사채, 주식 심지어 실물 자산까지 손을 댈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며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낮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미국의 부채를 흡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복지 지원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구 구성이 노령화됨에 따라 복지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긴축을 고려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도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 팬데믹 사태에서의 재정지출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현재 어느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이다. 우리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난 소득을 지급하고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지만, 그런 나라에 비하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규모가 작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더욱 고심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류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미국만 해도 휴지 품귀에 신선식품이 동나는 등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양이다. 우리도 마스크를 둘러싼 애로사항이 있었듯이, 생필품의 결핍을 겪는 일은 속상한 일이다. 저자는 식료품을 자유롭게 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기억이 지금의 십대들이 성장하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을 한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당연히 여겨왔던 먹을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농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커다란 역사적 사건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 놓는다. 한국의 IMF는 실제로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지 추후 관심을 가지고 볼 영역인 것 같다.

그동안 승승장구해왔던 여행업의 미래는 어둡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수요 공백 상태에서 이에 대한 이견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조금 독특한 견해를 내보인다.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성공적으로 종식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리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자는 강제적으로 홈캉스(집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보내 보니 편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앞으로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떠나기보다 오히려 집에서 휴식을 즐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원격근무의 확대와 더불어 비즈니스 여행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즈니스석의 수요 감소는 여행업의 수익성을 많이 떨어뜨린다.

농업이나 여행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19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달려있다. 매일 보도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뿐 아니라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가늠해보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여기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지만, 저자는 이 외에도 국제관계, 정치, 미디어, ESG,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여파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재택근무의 증가, 온라인 교육의 확대, 공중 보건 상황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 배출이 절감된 것 등이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이로 인한 변화를 예측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시기다.

KISO, 온라인 혐오표현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KISO가 7월 9일 광화문 S타워에서 주최한,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는 (왼쪽부터)이승현 연세대 법학박사,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택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사무관,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홍지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KISO

KISO는 지난 7월 9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등을 부추기는 혐오표현이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을 일찍부터 대응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을 검토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학 교수가 각자의 혐오표현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KISO 공식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토론회 자료는 KISO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KISO저널 제39호>

발행일 2020. 07. 31.
발행인 여민수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망고보드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KISO저널 39호의 본문은 나눔명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5204)

<편집위원>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구본권 선임기자(한겨레 신문사)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욱 차장/법학박사(네이버 서비스 정책실)
김훈건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전략실)
김성환 부장(카카오 대외협력팀)
편집간사/남동희, 장세리 연구원(KISO기획팀)



ISSN 2287-8866(Online)